

## 총학생회 임원 승인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13
제정일자	2000.03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00.03.02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산학처

제1조(선임) 본 대학 총학생회 임원(각 부서 부장, 차장)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제2조(자격) 총학생회 임원의 승인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, 통솔 능력이 있는 자
- 2.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
- 3. 전학기 성적 B급(3.00)이상인 자 (단, 신입생의 경우 석차순 40% 이내인 자)
- 4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5. 기타의 학생신분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**제3조(임기)** 총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각 부서장이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임명하여야 하며, 재임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부서장의 임명) 총학생회 각 부서장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며 대의원회 인준과 총장의 승인을 임명한다. (단, 성야부장은 가능한 야간 학생으로 임명한다.)

제5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

# 총학생회 임원 승인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13
제정일자	2000.03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